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사기진작 및 예우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면제대상자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에 까지 확대 적용(안 제4조의2)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

3. 참고사항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및 제10조의제2항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4조의2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내지 6급)”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내지 7급)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 한다.

제13조중 “제19조제8항”을 “제19조제10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를 각각 “동법 제21조”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제4조의2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4조의2제7호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4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18조제2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u>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u>	<u>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u>	[제명] 제명뛰어쓰기 적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 ----- ----- ----- -----	· 법령 표시 변경
제4조의2(주차요금감면)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의2(주차요금감면) ----- ----- ----- ----- ----- ---	
1. <u>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u>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1. 「 <u>도로교통법</u> 」 제2조제20호의 -----	· 법조항 변경 적용 · 법령 표시 변경
2. <u>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u>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내지 6급)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면제(증명서제시)	2.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u>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내지 7급)와 「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 -----	· 참전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감면범위 확대 · 법령 표시 변경
3. <u>장애인복지법</u> 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 <u>자동차관리법</u> 에의한 경자동차 : 50퍼센트 감면(스티커부착 또는 증명서제시)	3. 「 <u>장애인복지법</u> 」----- ----- ----- 「 <u>자동차관리법</u> 」 ----- ----- ---	· 법령 표시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4. ~ 6. (생략) 7. <u>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u>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도장애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차량 (환자증명서 제시) : 면제	4. ~ 6. (현행과 같음) 7.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	• 법령 뛰어쓰기 및 법명 표시 변경
제10조(이용제한) ① (생략)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 자동차의(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 주차를 금지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조(이용제한) ①(현행과 같음) ②----- ----- -----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 ----- ----- -----	• 법조항 변경 적용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8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설치 심의등) -- -----제19조제10항----- ----- ----- -----	• 법조항 변경 적용
제15조의2(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u>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u>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동법</u>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제15조의2(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제9조제2항----- ----- ----- ----- ----- <u>동법</u> 제21조----- ----- ----- 4. ----- ----- ----- -----	• 법명 및 법조항 변경 적용

참 고 자 료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 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